【 주간이슈 】

국내외 지급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

최형선 연구위원

□ 최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신용카드사와 지급카드 가맹점 간에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

□ 현재 우리나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인하폭은 신용카드보다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용카드사는 적정한 가맹점수수료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와 그 격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지급카드 가맹점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또는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된다면 즉시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험료 수납에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수납을 금지한 일부 보험상품의 보험료 수납에 계좌이체와 함께 체크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보험계약자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o 그러나 현 수수료 수준에서 체크카드를 통한 보험료 수납이 확대할 경우 보험회사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의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통한 보험료 수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1. 논의 배경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신용카드사와 지급카드 가맹점 사이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최근 일부 생명보험회사[1]와 신용카드사 간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협상이 주목을 받고 있음.

- o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다시 첨예화됨.
- o 현재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대상 상품 선정 및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
  - 신용카드 결제대상 상품을 정기보험, 어린이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에 국한하기로 합의
  -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협상은 보험회사과 신용카드사 간의 이견이 엇갈리면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탈퇴를 고려하고 있음.

□ 또한 체크카드 이용도 확대됨에 따라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용카드를 포함한 해외 지급카드 가맹점수수료 현황 및 특징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지급카드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우리나라 지급카드 정의 및 이용 현황

□ 지급카드는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시 사용되는 카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지급카드를 신용·체크·직불·선불카드 등으로 구분

- o 신용카드는 사용 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신용공여가 가능

1)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o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사용 시 은행 잔액 한도 내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음.

-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모두 즉시 결제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체크카드는 직불카드[2]와는 달리 현금서비스 등 신용공여가 가능하고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o 선불카드는 일정금액이 저장된 카드를 통해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음.

□ 2004년 이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이용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직불카드의 이용건수는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o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2004년 이후 매년 10.0% 이상 증가하였으며 체크가드와 선불카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o 그러나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시간[3]도 제한되어 있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그 이용건수가 줄어들고 있음.

<표 1> 지급카드별 이용건수 추이

(단위: 백만건,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용카드	2,271.7 (3.4)	2,668.4 (17.5)	3,129.7 (17.3)	3,472.5 (11.0)	4,147.4 (19.4)	4,880.1 (17.7)
체크카드	77.6 (-)	195.5 (151.9)	328.9 (68.2)	510.9 (55.3)	742.6 (45.4)	1,049.0 (41.3)
직불카드	1.1 (22.3)	3.5 (219.5)	2.5 (-30.2)	1.8 (-25.6)	1.3 (-27.2)	1.0 (-23.0)
선불카드	6.1 (-)	11.0 (80.0)	15.4 (40.8)	19.2 (24.9)	21.0 (8.4)	30.0 (44.4)

주: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ECOS

□ 이용금액의 추이도 이용건수 추이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선불카드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직불카드는 200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o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13.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체크가드와 선불카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3) 은행공동망 이용시간(08:00~23:30)에 한함.

o 그러나 직불카드는 이용건수 추이와 마찬가지로 이용금액 추이에서도 200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표 2> 지급수단별 이용금액 추이

(단위: 십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용카드	352,505.5 (-26.8)	360,698.7 (2.3)	370,958.5 (2.8)	403,632.2 (8.8)	456,420.6 (13.1)	466,358.1 (2.2)
체크카드	2,636.9 (-)	7,773.8 (194.8)	12,329.9 (58.6)	18,826.8 (52.7)	26,802.0 (42.4)	36,461.6 (36.0)
직불카드	70.3 (13.2)	174.1 (147.7)	113.1 (-35.0)	79.2 (-30.0)	57.4 (-27.5)	44.8 (-22.0)
선불카드	260.5 (-)	527.8 (102.6)	728.3 (38.0)	923.0 (26.7)	1,019.5 (10.5)	1,290.6 (26.6)

주: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ECOS

3. 국내외 지급카드 가맹점수수료 비교

가. 우리나라

□ 우리나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o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000년 2.92%에서 2008년에는 2.22%까지 하락하였고,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004년 2.33%에서 2008년 1.92%까지 하락

<표 3> 지급카드의 가맹점수수료 추이(평균)

(단위: %)

연도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신용카드	2.92	2.29	2.33	2.36	2.32	2.28	2.22
체크카드	-	-	2.33	2.33	2.33	2.27	1.92

자료: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2010.1.,
한국은행, 「주요국 지급카드 수수료 비교 및 시사점」, 2010.4.,
이재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필요성 및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0.9.

□ 2008년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크게 인하되기는 하였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의 가맹점수수료 차이가 0.30%에 머물고 있음.

□ 업종별로도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체크카드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고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o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대금결제 리스크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화 되어 있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가맹점을 공유함으로써 수수료가 차등화 되어 있음.
  - 대체로 필수재 관련 업종은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고 유흥 및 사치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음.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1.50~3.60%이며 이는 할인점, 백화점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귀금속, 유흥 및 사치업에 비해 낮은 수준

o 백화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의 업종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에 가맹점수수료 차이가 거의 없음.

<표 4> 지급카드의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단위: %)

업종	가맹점수수료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융 및 보험업	1.50 ~ 3.60	1.50 ~ 3.60
할인점	1.50 ~ 2.70	1.50 ~ 2.50
백화점	1.50 ~ 3.24	1.50 ~ 2.50
슈퍼마켓	1.50 ~ 3.24	1.50 ~ 2.50
귀금속	2.20 ~ 4.05	2.00 ~ 4.05
패션잡화	2.00 ~ 3.60	2.00 ~ 3.60
숙박	2.00 ~ 3.60	2.00 ~ 3.60
유흥 및 사치업	2.70 ~ 4.50	2.00 ~ 4.50

주: 1) 2010년 10월 28일 기준, 2) 최저치, 중간치, 최고치를 모두 포함한 수치
자료: 여신금융협회

나. 해외 주요국[4)]

□ 해외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GDP 대비 신용카드의 이용 비중이 낮고 체크카드의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해외에서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들 모두를 직불카드라 칭함. 본고에서는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모두를 체크카드라 칭함.

o 우리나라의 GDP 대비 신용카드 이용 비중은 41.4%, 체크카드 이용 비중은 1.9%로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체크카드의 이용 비중이 크지 않음.

<표 5> GDP 대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 비중

(단위: %)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신용카드	41.4	15.2	8.1	15.7	0.0	5.1
체크카드	1.9	8.6	16.5	10.2	5.6	9.8

주: 2007년 기준
자료: 이재연, 「직불 및 체크카드 활성화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2009.11.

□ 해외 주요국의 지급카드 가맹점수수료는 대부분 우리나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인 2.22%와 1.92%보다 낮은 수준

o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스위스(2.8%)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2.0%를 넘지 않고 있으며 호주(0.8%)와 프랑스(0.7%)가 가장 낮은 수준
o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스페인(1.55%), 프랑스(0.7%), 이탈리아(0.7%), 미국(0.7%)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수료가 0.5% 미만을 기록

<표 6> 해외 주요국 가맹점수수료

(단위: %)

구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신용카드	1.50	0.95	0.70	1.75	1.70	1.65	1.55	2.80	1.65	0.80	2.00	2.00
체크카드	0.20	0.15	0.70	0.30	0.70	0.15	1.55	0.20	0.30	-	0.25	0.70

주: 1) 덴마크(2004년 기준), 호주(2009), 미국(2008)을 제외한 국가들은 2006년 기준,
2) 호주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는 마이너스로 추정
자료: Lydian Payments Journal, 2010.1.,
한국은행, 「주요국 지급카드 수수료 비교 및 시사점」, 2010.4., 재구성

□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o 스페인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체크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낮게 책정되고 있음.

4. 우리나라 가맹점수수료 개선논의 및 인하 사례

□ **지급카드의 가맹점수수료 개선논의는 지금까지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초점이 맞추어짐.**

- o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업종별 수수료의 인하뿐만 아니라 업종간 수수료 격차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 o 체크카드의 경우 그 이용이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되어 적정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는 미미한 상황

□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를 배경으로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협상력이 낮은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5)]

- o 첫째, 신용카드 이용자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사 간의 과다경쟁이 일어날 경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음.
- o 둘째, 소득공제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 약화를 가중시킴.

□ **이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3조 제1항, 제3항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납 거부 및 가맹점수수료 전가를 금지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6)]

- o 만약 신용카드 가맹점 탈퇴가 쉽지 않은 시장구조일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유인이 더욱 줄어듦.

□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결제금액에 연동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그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7)]

---

5)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2008.9.,
정찬우,『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8.12.
윤성훈·이경아,「신용카드시장의 특징과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 보험연구원, 2009.12.

6) 윤성훈·이경아,「신용카드시장의 특징과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 보험연구원, 2009.12.

7) 박인철, 「보험료 카드결제 논쟁의 해법」『Card Business Brief』, 제10-6호, Vol. 49, 비씨카드, 2010.6.

o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도 신용카드 이용자와 유사하게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세제혜택[8]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

□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은 2007년부터 영세가맹점 및 재래시장 가맹점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음.**

o 최근 2010년 4월에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었음.
-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간 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9]에 대해서 수수료를 1.6~1.8%로 인하
-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를 2.0~2.15%로 인하

<표 7>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사례

시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07년 8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2.0~4.5%	2.0~2.2%
	신용카드 일반가맹점	1.5~4.5%	1.5~3.6%
	체크카드	1.5~4.5%	1.5~2.3%
2008년 10월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평균 2.74%	평균 2.57%
2009년 2월	신용카드 재래시장	2.0~3.6%	2.0~2.2%
2010년 4월	신용카드 재래시장	2.0~2.2%	1.6~1.8%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평균 2.57%	2.0~2.15%

자료: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2010.1.,
한국은행, 「주요국 지급카드 수수료 비교 및 시사점」, 2010.4.

□ **체크카드는 즉시결제가 이루어기 때문에 신용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보다 낮아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10].**

o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용자의 예금 잔액 한도에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용구매로 유발되는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연체관리비용 등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액 일정부분이 소득세 공제대상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업점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0분의 2)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고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임.
9) 금융위원회는 재래시장 가맹점 및 연간 매출규모가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 현황은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라고 발표
10) 이재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필요성 및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0.9.

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o 그러나 우리나라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o 따라서 우리나라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더욱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

5.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인하폭은 신용카드보다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용카드사는 적정한 가맹점수수료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와 그 격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지급카드 가맹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o 신용카드사가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사와 지급카드 가맹점 모두 수수료 협상에서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적정한 수수료 수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는 앞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11] 또는 계좌이체[12]수수료 수준으로 인하된다면 즉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험료 수납에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수납을 금지한 일부 보험상품의 보험료 수납을 계좌이체와 함께 체크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보험계약자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o 그러나 현 수수료 수준에서 체크카드를 통한 보험료 수납이 확대할 경우 보험회사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지급카드의 이용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지급카드를 통한 보험료 수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KiRi**

11)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46조 2호(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따라 금융결제원과의 제휴를 통해 국세·관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1.2% 수준이고 동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

12) 계좌이체(자동이체) 수수료는 건당 150원 수준